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286

발의연월일: 2021. 1. 11.

발 의 자:김상희·김승원·양정숙

홍정민 · 김홍걸 · 박성준

임종성 · 이성만 · 인재근

맹성규 · 전혜숙 · 신정훈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 선 이용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 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팀을 통해 원전의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어, 방사선작업종사자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원자력이용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하 여도 방사선 노출과 질병 간의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되고 있음.

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중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 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5조의2제1항 및 제4항). 법률 제 호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75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5조의2제1항 중 "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"을 "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중 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7755호 원자력안전법	법률 제17755호 원자력안전법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제105조의2(방사선 건강영향조사)	제105조의2(방사선 건강영향조사)
① 위원회는 방사선 이용이 <u>방</u>	① <u>국</u>
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미치	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
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	악하기 위하여 방사선으로 인한
<u>사를</u> 실시할 수 있다.	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
	는 지역 중 위원회와 관계부처
	가 협의하여 정하는 범위의 지
	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
	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
	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
	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
	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	<u>정한다.</u>